

2004. 6.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제101회 제1차 정례회에 붙임  
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1부.

발의자 : 김성진 의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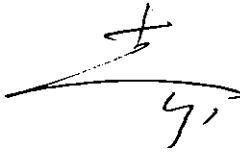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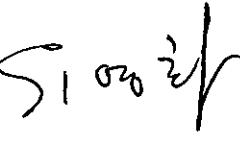
외 3인

(찬성자 서명 별첨)

제천시의회	의장	이 죠	부의장	
접수일시	2004. 6. 16. 시	면 772	국장	134
처리과	제천시의회		담당	이영숙

느거니  
미국수제  
임상도화  
전통기원  
기록  
한국(1970)  
? 이어진다

제천시장에 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  
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안발의 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김성진		
李東吉		
이정호		
류복호		

##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 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918
------	-----

발의년월일 : 2004. 6. 15.  
발의자 : 김성진 의원외 3인

### 1. 제안이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시 장애인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등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 우선권 부여

-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노인 또는 모·부자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계약하도록 규정

#### ○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 시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 제천시장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붙임 :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1부. 끝.

##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 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노인복지법 제25조 및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2.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3.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②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권 부여) ①시장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미과세 대상자
3. 저소득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계약한 장애인 등은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있는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한 자에 대해 최소한 1월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및 계약기간 등) ①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

[별지 1호 서식]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장애인등급 (노인, 모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여부		
신청사항	신청장소				
	신청대상	매점	자동판매기		
	신청내용	매점 자동판매기	개소(      m <sup>2</sup> )	개소(커피      대, 음료수      대)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  
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치계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귀하

※ 장애인등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

## □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제29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장애인의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

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③장애인의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